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3가단28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F 대 33㎡ 중 각 1/8지분(G 1/2 지분 전부)에 관하여 2016. 8. 10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다만, 취득시효완성일인 2009. 8. 20.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 2016. 8. 10.로
정정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C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D, E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권희

별지